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에너지 교육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590호·제2210591호)

2026. 2.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에너지 교육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명시	3

I. 제안경위

2025년 5월 23일 허성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21059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제2210591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부족함.

이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호의 2 및 제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에너지 교육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명시

두 개의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원대상으로 에너지 교육사업을 포함시키고,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사업 실시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에너지 교육 사업</u>

[「에너지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제18조의2에 따른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7. ~ 11. (생략)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
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 12. (생략)

② (생략)

<신설>

7. ~ 11. (현행과 같음)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① -----

-----.

1. -----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에너지 교육)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에너지 가치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기후변
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
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에
너지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
른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운영
2. 국민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
는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3. 에너지 관련 교육교재, 웹사이트, 영상자료 등의 기획·제작 4. 에너지 분야 교육 강사의 양성·보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교육 관련 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은 각각 기후위기 대응 교육, 신·재생에너지 분야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

개별법 목적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또는 특정 에너지원 중심의 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체계적 교육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등 급격한 에너지 환경변화 속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행동변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이 필수적임.

특히, 에너지 안보, 에너지전환, 에너지효율, 경제적 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포괄하는 국민 대상 교육체계가 부재하여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두 개정안은 에너지 교육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에너지 교육을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한 예산 지원을 통해 교육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국민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정부가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강사 양성 등의 업무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의 실시 의무를 정부에 부여한 이상, 강사 양성 및 콘텐츠 개발 등은 교육 수행을 위한 본질적·수반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우선적으로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자연스러워 보임.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정부의 역할로 명시하되²⁾, 그 집행을 공공기

2) 일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창업교육에 부수된 업무를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조(창업교육의 활성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저변의 확충 및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학생 및 청년 등 국민과 창업기업 등에 창업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창업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 지역별 창업교육의 활성화

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소관 업무로 이관되었으므로 개정안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에너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의 에너지 교육 시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정안에 더하여 경제적·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및 에너지 자급도 제고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안보’를 교육의 목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교육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외에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인식 개선

5. 창업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 창업교육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의 교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등과 창업교육 간 연계

8. 그 밖에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36